

에가툷(EGATTOC) 대관 및 이용약관

제정 2026.03.01. / 시행 2026.03.01.

v1.1 (법률 검토 반영본)

제1조 (목적 및 적용)

① 본 약관은 에이비티제주(브랜드 ‘에가툷(EGATTOC)’ 운영, 이하 “운영자” 또는 “갑”이라 한다)가 제주 특별자치도 한라산 인근에 운영하는 에가툷 공간(이하 “공간”이라 한다)의 대관 및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상 소비자(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강행적 소비자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본 약관의 내용은 그 한도에서 효력이 없으며, 해당 강행규정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모임·행사·프로그램·촬영 등을 목적으로 운영자가 지정한 공간을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1호의 대관 공간에 비치된 가구·집기·기본 음향·기본 조명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란 다도·티 세션·웰니스·리트릿 등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진행자가 운영하는 경험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공간 사용료, 프로그램비, 기획·커스터마이징비, 운영 인력비, 청소·복구비, 촬영·콘텐츠 사용권 등 대관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통칭한다.
5. “이용자” 또는 “을”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와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보증금”이란 공간·가구·집기의 원상 유지 및 규정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용료와 별도로 납부하는 현금성 담보금을 말한다.
7. “게스트”란 이용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관 공간 및 이용 범위)

① 이용자는 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대관할 수 있으며, 각 공간의 세부 규격은 [붙임 1]에 따른다.

1. 라이브러리
2. 웰니스 센터
3. 캐빈(단독 캐빈) 및 다이닝 라요
4. 전관(위 공간 전체)

- ② 대관에는 운영자가 비치한 기본 가구·집기, 기본 조명 및 공간 컨디션 유지가 포함된다. 사용 가능한 가구·집기의 세부 품목은 [붙임 2]에 따른다.
- ③ 이용자는 대관과 함께 컨트롤·준비 공간, 주차공간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구성은 [붙임 3]에 따른다.
- ④ 공간 내 모든 시설·가구·집기의 사용은 대관 공간 내부로 한정하며, 운영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외부 반출하거나 계약 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대관 단위 및 이용 시간)

- ① 공간별 최소 대관 단위 및 이용 가능 시간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관 계약서 및 견적서에 명시한다. 라이브러리·웰니스 센터는 시간 단위, 캐빈은 박 단위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셋업(준비) 및 철수 시간은 모두 계약된 대관 시간에 포함되며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시작 시간 이전 입장 및 계약 종료 시간 이후 체류는 사전 협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이용자는 입장 시 운영 매니저와 함께 공간 상태를 확인하고 입장 전 체크리스트(공간 상태 확인서)에 서명한 후 입장하며, 퇴장 시에도 운영 매니저와 함께 공간 상태를 확인한다.
- ④ 승인된 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종료 전 운영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초과 이용료가 부과된다.
- ⑤ 운영자는 시설 점검·보수·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 승인이 확정된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며,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만큼의 이용료를 환급한다.

제5조 (사전 답사 및 셋업)

- ① 이용자는 원활한 행사·촬영 진행을 위해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 답사 또는 셋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정 및 이용료는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그 비용은 견적서에 반영한다.
- ② 사전 답사·셋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진행 지연, 기술적 오류, 결과물 품질 저하 등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할증)

- ① 공간 사용료, 프로그램비, 기획비, 운영 인력비, 청소·복구비, 촬영·콘텐츠 사용권 등 구체적인 이용료는 행사 목적·사용 공간·프로그램 구성·운영 인력·결과물 사용 범위에 따라 산정하며, 운영자가 발행하는 견적서 및 대관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따른다.
- ②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가산된다. (VAT 처리 기준 확정 필요)
- ③ 정규 이용 시간 외 이용 및 특정 조건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할증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할증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할증률 하나만 적용한다. (복수 할증 합산 여부 확정 필요)

1. 주말 및 공휴일 이용: **30%** 할증

2. 성수기(7-8월 및 12월) 이용: **20%** 할증

3. 야간(22시 이후) 이용: **50%** 할증 (야간 기준 시간 확정 필요)

④ 이용자가 계약된 퇴장 시간을 초과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료를 부과하며, **30분** 단위로 산정한다.

1. 30분 이내 초과: 최초 1회에 한하여 경고

2. 30분 초과 - 1시간: 시간당 단가의 150%

3. 1시간 초과: 시간당 단가의 200%

※ 이용료 단가 및 할인 가능 항목은 견적 상담을 통해 안내하며, 본 약관에는 구체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 (할인 및 감면)

①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가격 협상을 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1. 동일 일자에 둘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2. 캐빈 2박 이상과 라이브러리·웰니스 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3. 평일·비성수기 장기 계약의 경우

4. 2회차 이상 반복 거래 기업의 경우

②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하나를 적용한다. 할인율 및 승인 주체는 운영자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③ 협찬·인플루언서 제안은 대관 할인 항목이 아니며, 마케팅 협업으로서 별도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제8조 (이용 절차)

① 공간의 대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는 운영자가 안내하는 채널(이메일 등)을 통해 행사 개요, 희망 일시, 예상 인원, 사용 희망 공간, 촬영 계획 및 결과물 사용 범위를 포함한 대관 문의를 접수한다.

2. 운영자는 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가용 일정과 맞춤 견적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3. 운영자는 행사 목적·브랜드 적합성·사용 범위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4. 이용자는 견적 및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운영자와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

② 운영자는 계약 체결 전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전자적 방법 포함)하고, 위약금·취소 및 환불·보증금 차감·촬영 결과물 사용권·관할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이용자의 동의(서명 또는 전자적 동의)를 받는다. 운영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승인된 이용 일정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 7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하고 운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으로 이용료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④ 복수의 신청으로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 운영자는 행사 목적 적합성, 신청 순서, 계약·대금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9조 (대금 및 결제)

① 이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그 비율 및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금 비율·잔금 기한 확정 필요)

1. 계약금: 총 이용료의 **50%**, 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잔금: 잔여 금액, 행사일 **7일** 전까지 완납

② 이용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도 납부가 없는 때에 한하여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의 반환 및 위약금은 제11조의 취소·환불 기준에 따르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본다.

③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잔금 납부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 기준 확정 필요)

제10조 (보증금)

①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운영자가 지정하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보증금은 계약금이 아니며, 이용료에 산입되지 않는 환급성 담보금이다. 보증금 금액은 행사 규모·유형·위험도에 따라 운영자가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운영자는 행사 종료 후 공간 상태를 점검하여 차감 사유가 없는 경우 행사 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 차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행사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차감 사유, 증빙 사진 및 차감 금액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한다. 이용자는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간·가구·집기의 훼손·오염, 규정 위반, 초과 청소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해당 실비를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 차감 기준은 제18조 및 별첨 보증금 차감 기준표에 따른다.

⑤ 차감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차액을 운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취소 및 환불)

①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본항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본다. 취소 통보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 기준일은 운영자가 서면 취소 통보를 수신한 날로 한다.

1. 행사일 **30일** 전 이상: 계약금 전액 환불

2. 행사일 **15일** 전 - **29일** 전: 계약금의 **50%** 환불

3. 행사일 **8일** 전 - **14일** 전: 계약금 환불 없음

4. 행사일 **7일** 전 - 당일: 계약금 및 잔금 환불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 제1항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또한 위약금이 운영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그 손해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캐빈 등 숙박을 포함하는 대관의 취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숙박업 분쟁해결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③ 운영자의 귀책 사유(시설 긴급 점검, 운영자의 사정 등)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기납부 이용료 전액(보증금 포함)을 환급하고, 이용자가 입증한 직접 손해를 별도 배상한다. 다만 운영자의 배상 상한은 기납부 이용료의 **2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3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는 기납부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며 양 당사자는 추가 배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항상 전액 환급한다.

⑤ 이용료의 환불은 취소 신청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촬영 및 콘텐츠 결과물 사용)

① 공간 내 촬영의 허용 여부와 범위, 결과물의 사용 범위는 “촬영 여부”가 아니라 “결과물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하며, 계약 체결 전 이용자가 제출하고 운영자가 확인한 [촬영·콘텐츠 사용범위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촬영 장비(카메라 수량, 조명 종류, 드론 등) 및 촬영 범위는 행사일 **7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공간 컨디션 또는 다른 이용자의 경험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사 현장 기록 및 운영자가 정한 내부 기록 목적의 촬영은 대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결과물의 상업적 사용권은 별도이다. 결과물을 광고·상세페이지·자사물·브랜드 캠페인·유료 매체·브랜드 필름·옥외·지면 광고 등에 활용하는 경우 사전 협의 및 별도 라이선스 비용이 적용된다.

④ 이용자가 확인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운영자는 즉시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용 범위에 상응하는 라이선스료 상당액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 청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이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상업적 사용을 한 경우, 운영자는 해당 사용 범위에 상응하는 라이선스료 상당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항의 청구는 제18조의 실손해 배상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는 라이선스 기준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에가툟 직원·운영 매니저·타 이용자·투숙객 등 제3자가 식별 가능하게 포함되는 촬영물은 해당 제3자의 서면 동의를 이용자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으로 발생하는 초상권·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⑦ 대관 공간 외부(숲, 주변 자연환경, 인접 캐빈 등)의 촬영은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외부 업체·집기·장비 반입)

① 이용자가 외부 케이터링 업체, 외부 조명·음향·무대 장비, 대형 구조물(세트·배너 구조물 등) 또는 기타 외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일 **7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반입에 대해서는 반입비 및 추가 청소비(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형 구조물 반입 시 보증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③ 외부 조명 장비(스트로브, 스모그 머신, 레이저 등) 및 외부 음향 장비 반입 시 운영자의 기본 음향·조명 시스템과의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반입 물품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운영자 자산과의 혼용·분실 방지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⑤ 승인되지 않은 장비·집기를 반입하여 공간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실비 전액을 배상한다. 외부 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파손·오염도 계약 주체인 이용자가 운영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용자와 외부 업체 간의 책임 분담은 이용자가 별도로 처리한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 외부 업체의 선임·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⑥ 운영자는 시설 보호를 위하여 반입·설치 과정에서 보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강 방식 및 재료는 작업 착수 전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가구 이동 및 공간 보호)

① 라이브러리·웰니스 센터 등 모든 공간의 가구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행사 특성상 가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 전 서면으로 신청하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② 프린츠한센 펠라구스 의자 등 맞춤 제작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집기 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낙서·스티커 부착, 음료 접촉, 못·테이프·드릴 등을 이용한 구조물 설치를 금지한다.

③ 가구 표면, 바닥, 벽면, 천장, 조명, 유리 등 공간 내 모든 시설·집기에 훼손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원상복구 비용(실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청구한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계약 전 운영자가 촬영하고 입장 시 갑·을이 함께 확인·서명한 입장 전 체크리스트 및 사진으로 한다.

④ 이용자는 퇴장 전 운영 매니저와 함께 공간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공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하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자의 객관적 기록을 손해 산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대관 계약서 및 [공간 사용 규정(하우스룰)]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 전 시설·가구·집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신고한 사용 목적과 인원 범위 내에서만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 운영자는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하거나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요금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사 중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가 지정된 방법으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한다. 외부 케이터링 및 식음료 관련 쓰레기도 이용자가 처리하며, 청소 범위를 초과하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추가 청소비가 청구된다.

④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공간 내에서 금지된다.

1. 사전 승인 없는 가구 이동 및 계약 구역 외 공간의 무단 사용

2. 사전 승인 없는 외부 조명·음향 장비 반입 및 사전 승인 없는 드론 촬영

3.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업적 촬영 및 결과물의 무단 상업적 사용

4. 운영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에가툟 브랜드명·로고·공간명 노출

5. 오픈 파이어(직화 요리, 모닥불), 벽·천장 손상 행위, 건물 내부 및 캐빈 데크에서의 흡연(전자담배 포함)

6. 에가툷 직원·운영 매니저·타 이용자·투숙객에 대한 폭언·위협·폭행 등 위법 행위 및 운영자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대한 불응

제16조 (안전관리)

- ① 이용자는 게스트의 공간 내 안전관리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며, 행사 규모와 성격에 맞는 안전관리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제공하는 운영 매니저는 공간 관리 목적으로만 배치되며 이용자의 안전관리 인력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 ② 행사 중 게스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원인이 운영자의 시설·설비의 하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 ③ 이용자는 행사 규모(**30인 이상**) 또는 야간 행사의 경우 행사 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고하며, 가입 시 보험 가입 증명서를 행사일 **3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한다. (**30인 이상** 행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여부 확정 필요)
- ④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운영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음식·주류·케이터링)

- ① 외부 케이터링 반입은 행사일 **7일** 전까지 운영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며, 반입비 및 추가 청소비(실비)가 발생한다. 허용되는 케이터링의 종류 및 식음 허용 공간의 범위는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부 케이터링 허용 범위 확정 필요)
- ② 주류 반입의 허용 여부 및 조건은 계약 체결 전 운영자에게 반드시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로 인한 공간 오염·소음·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허용 주류 종류·수량 기준 확정 필요)
- ③ 오픈 파이어(직화 요리, 모닥불), 강한 향신료 조리, 운영자 주방 시설의 무단 사용은 금지한다.

제18조 (손해배상책임)

- ①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게스트·외부 업체 등이 공간·가구·집기·장비에 파손 또는 오염을 일으킨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실비 배상 책임을 진다.
- ② 손해 금액은 운영자가 행사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산정하며, 필요 시 제3자 복구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는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산정된 배상 금액은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하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한다.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의 과실로 시설 점검·보수가 필요하여 후속 이용자의 예약 취소나 행사 지연 등 운영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로 인한 운영상의 손실 및 제3자에 대한 배상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⑤ 이용자의 배상 책임은 실제 복구 비용(실비)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실비를 초과하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⑥ 운영자의 귀책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배상 책임은 해당 계약의 기납부 이용료를 상한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이용 제한 및 승인 거절)

-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고소음·파티성 행사(EDM·클럽 콘셉트 등) 또는 음주 소비 자체가 주된 목적인 행사
 2. 에가툷의 브랜드·공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공간의 안전 또는 다른 이용자의 경험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3.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행사
 4. 결과물의 사용 범위를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답변하는 경우, 또는 광고·상업적 사용을 행사 명목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 ②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신청 승인을 거절하거나 이용 중인 공간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신청서 허위 작성, 명의 도용, 이용 권한의 무단 양도·전매가 발견된 경우
 2.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통념에 반하여 에가툷의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관료 또는 보증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하우스룰 또는 본 약관의 금지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운영자의 정당한 시정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5. 과거 규정 위반 또는 시설·집기 훼손 이력이 있어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이 중단된 경우, 운영자는 제11조의 취소·환불 기준에 준하여 정산하며 운영자에게 발생한 실손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 (에가툷 브랜드·공간명 노출)

- ① 이용자가 결과물(콘텐츠, 보도자료, 광고 등)에 에가툷 브랜드명, 로고, 공간명(라이브러리, 웰니스 센터, 다이닝 라요, 에가툷 등)을 상업적으로 노출하려는 경우 운영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 후기 등 사실에 부합하는 비상업적 표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승인 없는 상업적 브랜드 노출 또는 허위·비방 표현으로 에가툷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영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가툷 브랜드의 언급 방식 및 표기 기준은 운영자가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한다.

제2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호)

- ① 운영자는 대관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정보(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한다. 수집 목적은 계약 체결·이행, 대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사후 정산 및 분쟁 해결이며, 보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5년(상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보관 의무 기간)으로 한다.
- ② 운영자는 위 목적 이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수사기관 등이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보관 의무 기간 내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다.
- ④ 이용자가 게스트의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게스트의 동의는 이용자가 직접 취득하여야 한다.

제22조 (면책)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간(주차장 포함) 내 안전사고 및 물품의 분실·도난
2. 게스트의 개인 물품 분실, 참가자 간 분쟁
3. 이용자가 계약서 및 하우스룰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 또는 게스트가 에가툟 공간 외 지역에서 행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시설·설비의 안전 확보 및 이용자 물품의 보관 등 운영자의 본질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또는 운영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으로 운영자에게 손해나 소송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본다.

1.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화재, 낙뢰
2. 정부·지자체의 공식 방역 조치 또는 집합 금지 명령(감염병 확산 방지 포함)
3. 국가 비상사태 선포
4. 시설의 긴급 안전 점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금지 명령
5. 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먼저 인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행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는 기납부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며, 양 당사자는 추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전액 환급한다.

제2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이용자 주소지 관할 등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제1심 관할 법원을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의할 수 있다.

③ 본 약관 및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제25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관 신청 및 승인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관 계약서 및 [공간 사용 규정(하우스룰)]에 따른다.

- ②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운영자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 **10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까지 에가툟 홈페이지 또는 안내 채널에 게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대관 신청·승인 및 이용료 부과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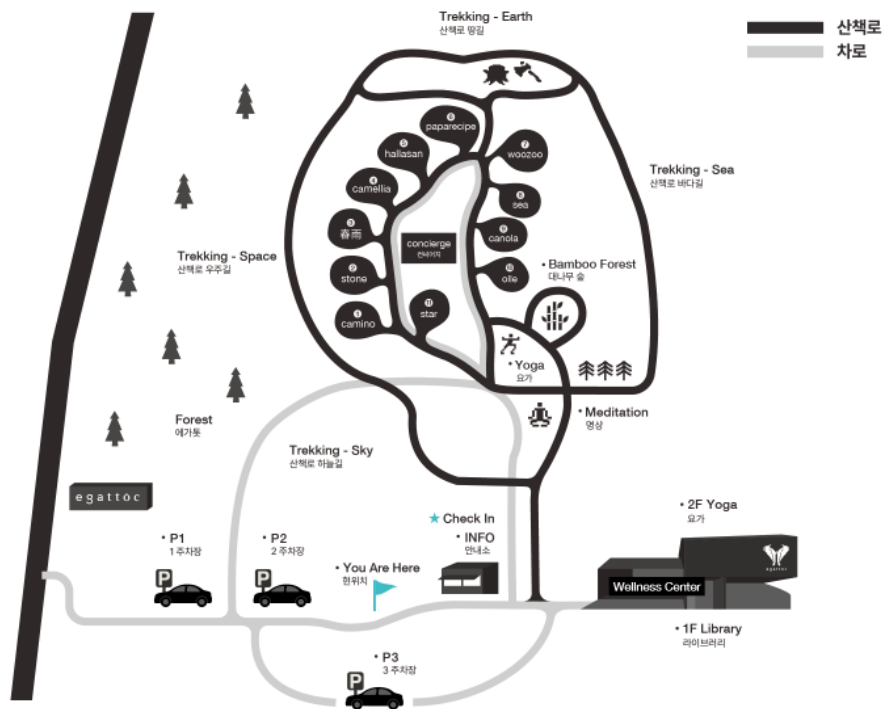
[붙임 1] 공간 세부규격

※ 각 공간의 도면·이미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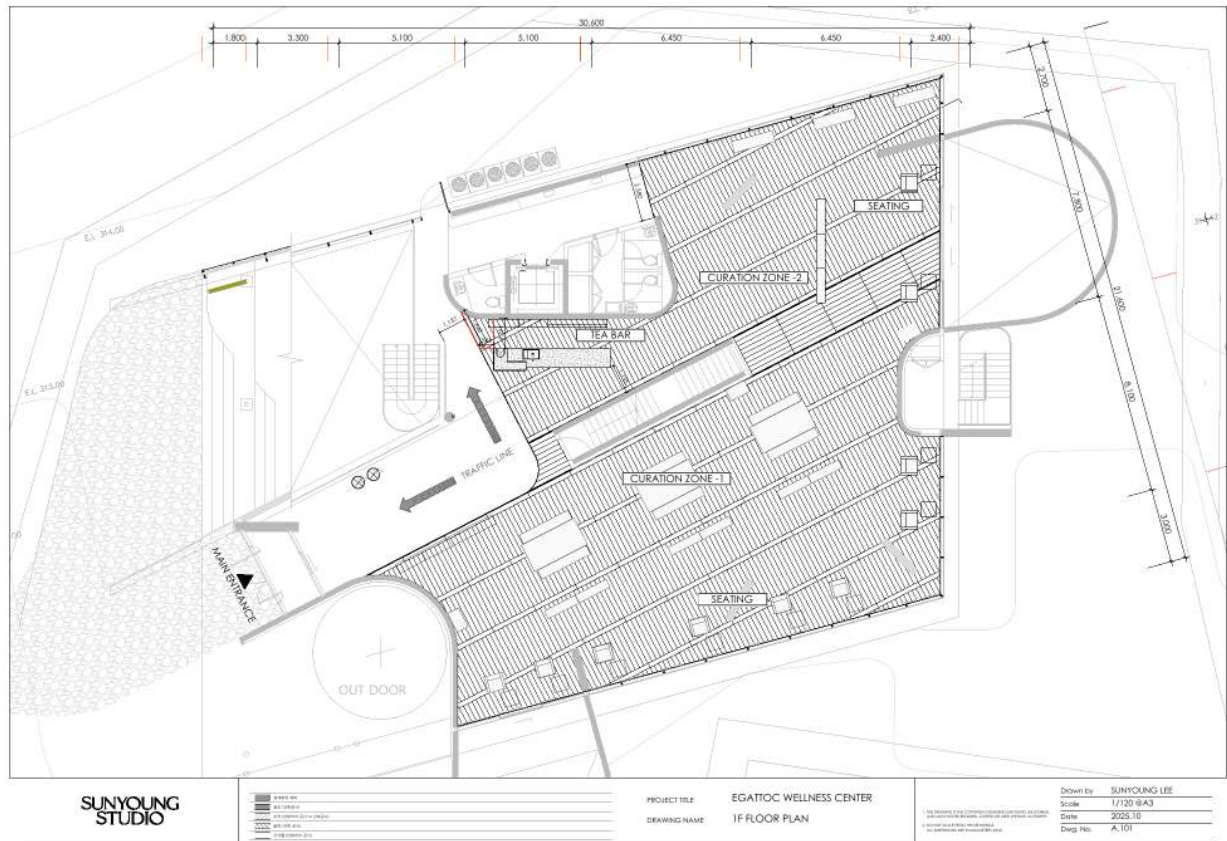
공간	세부 규격	포함 내역	수용 인원
라이브러리	위치: EGATTOC WELLNESS CENTER 1F 구조: 철근콘크리트 + 유리 커튼월 바닥: 오크 우드 플로어 층고: 약 4.5m / 트랙 레일 조명 조망: 한라산·자연 숲 전면 조망	제작 가구 일체 · 대형 디스플레이 테이블 3점 · 카운터 디스플레이 벤치 6점 · 오픈 북셀프 9점 · 등받이 리딩 벤치 3점 · 사이드 테이블 10점 Fritz Hansen Pelikan Chair 10점 Fritz Hansen T7 Chair 6점 미술품 3점 (최명영 2, 김춘수 1) 기본 트랙 조명·음향 시스템	최대 30인
웰니스센터	위치: EGATTOC WELLNESS CENTER 1F~2F 구조: 화이트 메탈 메쉬 천창 (자연채광) 특징: 원형 유리 바닥 (직경 약 8m) 오픈 커튼 구조 / 2F 별도 요 가 공간 요가·명상·사운드베이스 전용 독립 공간	요가 매트 일식 싱잉볼·징 (사운드베이스 도구) 명상 도구 기본 조명 시스템 운영 매니저	최대 50인
캐빈 (단독 캐빈)	단독 캐빈 총 11동 · 단층 8동 / 복층 3동 산림 내 독립 배치 각 캐빈 개인 핫터브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각 캐빈 내부 가구 일체 개인 핫터브 기본 냉난방·조명 다이닝 라요 (식사 공간) 연계	최대 25인 (1인 1실 기준 11인)
다이닝 라요	캐빈 단지 내 독립 식사 공간	식탁 및 의자 일체 주방 기기 (협의 후 사용) 기본 조명	계약 시 협의
전관	라이브러리 + 웰니스센터 + 캐빈 11동 + 다이닝 라요	전 공간 시설 일체 캐빈 1박 포함	계약 시 협의

공간 이미지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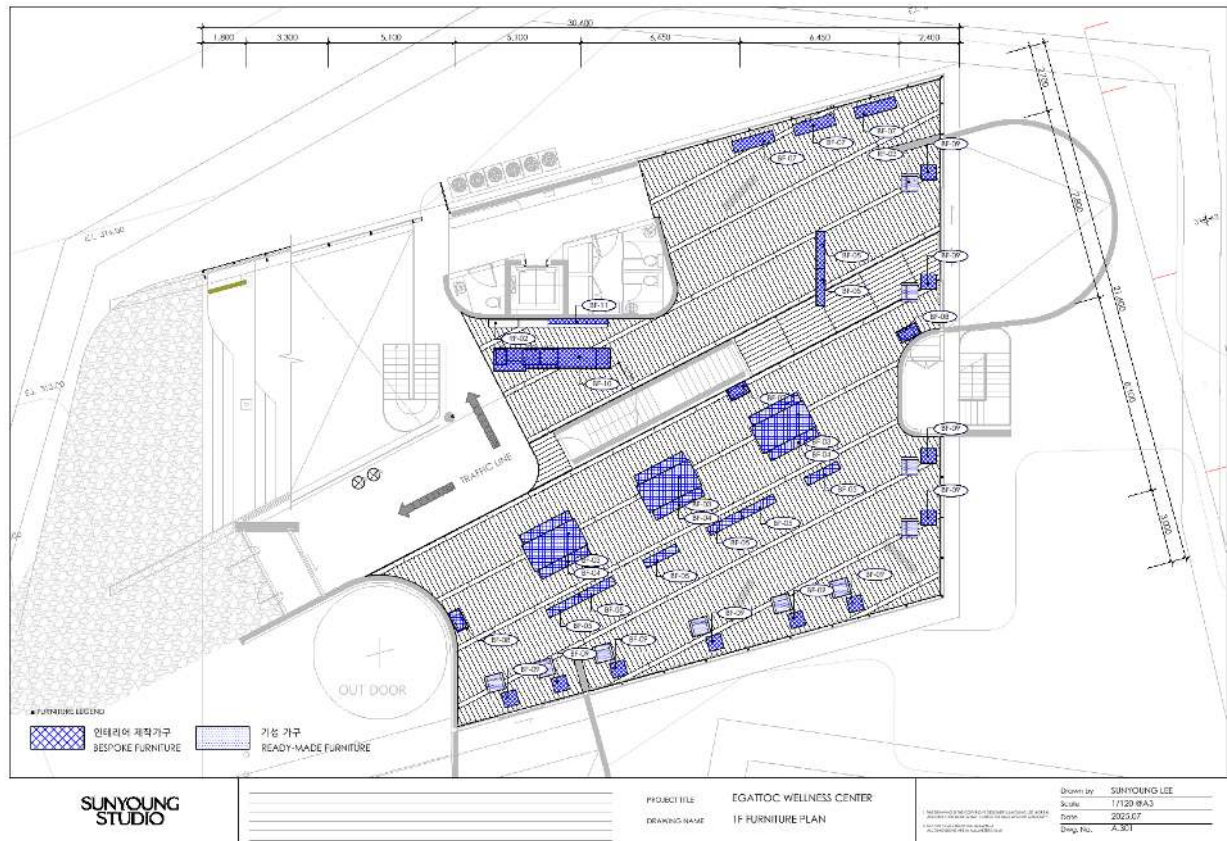
[에가툏 전체 배치도]



[1F 평면도 (EGATTOC WELLNESS CENTER)]



[1F 가구 배치도 — 제작가구·기성가구 구분]



[라이브러리 — 건물 외관 (야경)]



[라이브러리 — 내부 전경]



[라이브러리 — 가구 배치 전경]



[라이브러리 — 북셀프·조명 디테일]



[라이브러리 — 사이드 테이블 & Pelikan Chair]



[웰니스센터 — 건물 드론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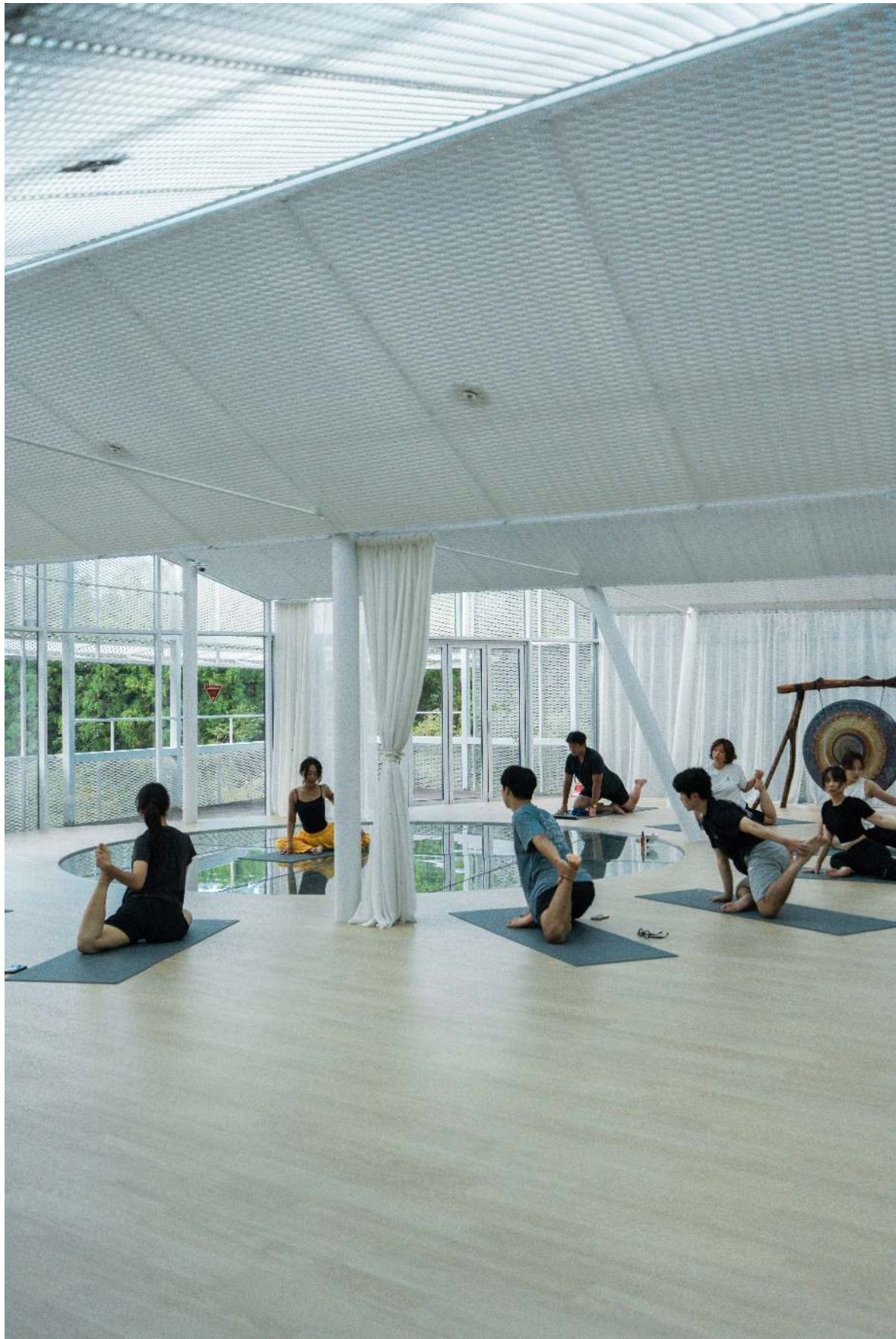
[웰니스센터 — 내부 전경 (원형 유리 바닥)]



[웰니스센터 — 요가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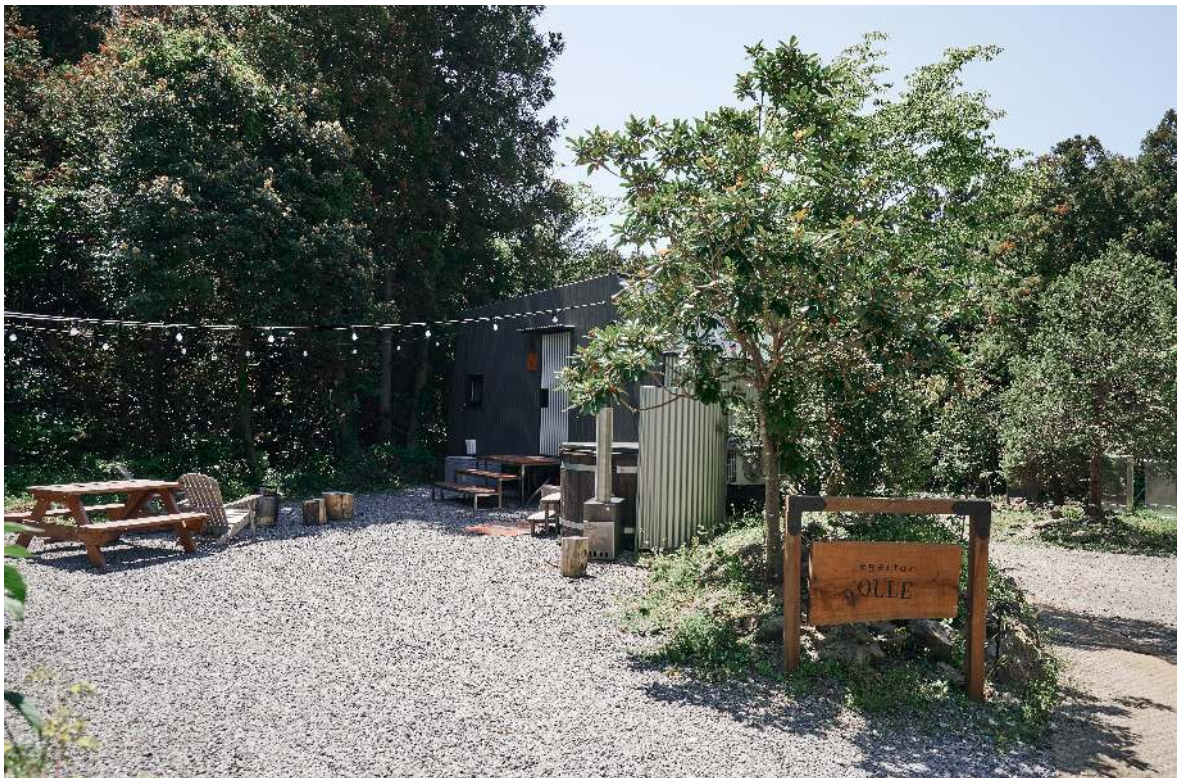
[웰니스센터 — 싱잉볼·사운드배스]



[에가툷 캐빈 — 전경 드론뷰 (낮)]



[에가툷 캐빈 — 단독 캐빈 외관]



[붙임 2] 사용 가능 집기·장비 리스트 및 이용료

※ 사용 가능한 집기·장비의 품목·수량·스펙·이미지 및 품목별 이용료는 추후 첨부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자리표시이며 빈칸으로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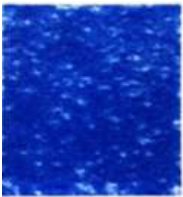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스펙/규격	수량	단위	이용료
제작가구	대형 디스플레이 테이블	W2,400 × D1,200 × H755mm 설계: SUNYOUNG STUDIO	3	점	대관료 포함
제작가구	카운터 디스플레이 벤치	W2,400 × D500 × H850mm 설계: SUNYOUNG STUDIO	6	점	대관료 포함
제작가구	오픈 북셀프 (3단)	W1,460 × D350 × H1,210mm 설계: SUNYOUNG STUDIO	9	점	대관료 포함
제작가구	등받이 리딩 벤치	W1,460 × D340 × H750mm 설계: SUNYOUNG STUDIO	3	점	대관료 포함
제작가구	사이드 테이블 (BF09)	W500 × D500 × H640mm 설계: SUNYOUNG STUDIO	10	점	대관료 포함
기성가구	펠라구스 체어 (Pelikan Chair)	Fritz Hansen / Pelikan Chair EJ21 · 디자이너: Finn Juhl (1940) · 패브릭 쿠 션 포함 · 이동·적재 엄격 금지	10	점	대관료 포함

기성가구	T7 체어	Fritz Hansen / T7 Chair · 스택 가능 형 · 이동·적재 엄격 금지	6	점	대관료 포함
미술품	Ultra-Marine 1733	작가: 김춘수 (Tschoonsu Kim, b.1957) 제작연도: 2017 기법: Oil on canvas 크기: 172.8 × 142.3cm ※ 접촉·오염· 이동 절대 금 지 ※ 훼손 시 실 손해액 전액 배상	1	점	—
미술품	평면조건 9860 (Conditional Planes 9860)	작가: 최명영 (Choi Myoung Young, b.1941) 제작연도: 1998 기법: Acrylic on canvas 크기: 227.3 × 181.8cm ※ 접촉·오염· 이동 절대 금 지 ※ 훼손 시 실 손해액 전액 배상	1	점	—

미술품	평면조건 96261 (Conditional Planes 96261)	작가: 최명영 (Choi Myoung Young, b.1941) 제작연도: 1996 기법: Acrylic on canvas 크기: 227.3 × 181.8cm ※ 접촉·오염·이동 절대 금지 ※ 훼손 시 실 손해액 전액 배상	1	점	—
-----	--	---	---	---	---

※ 단위: 원, VAT 별도 / 구체 금액은 견적서에 따른다.

미술품 이미지:

	김춘수 Tschoonsu Kim b.1957	Ultra-Marine 1733	2017	oil on canvas	172.8 × 142.3cm
	최명영 Choi Myoung Young b.1941	평면조건 9860 Conditional Planes 9860	1998	acrylic on canvas	227.3 × 181.8cm(150)
	최명영 Choi Myoung Young b.1941	평면조건 96261 Conditional Planes 96261	1996	acrylic on canvas	227.3 × 181.8cm(150)

[미술품 설치 사진 — 최명영 평면조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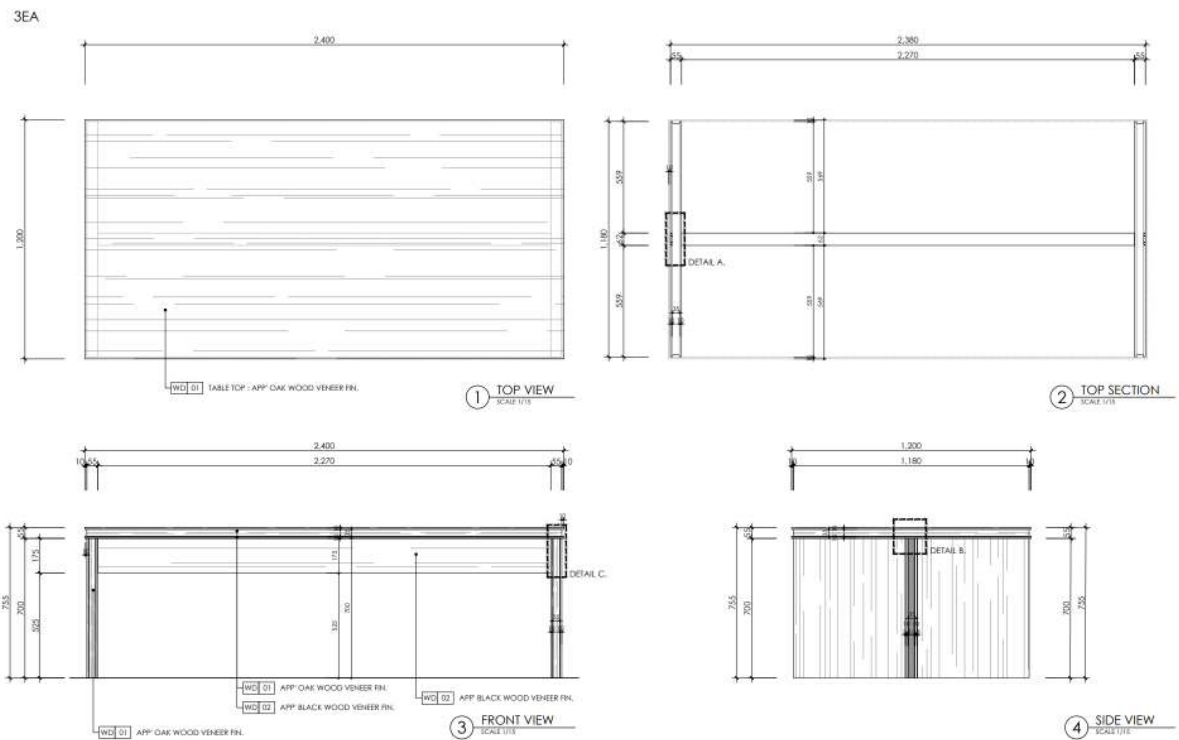


[미술품 설치 사진 — 최명영 평면조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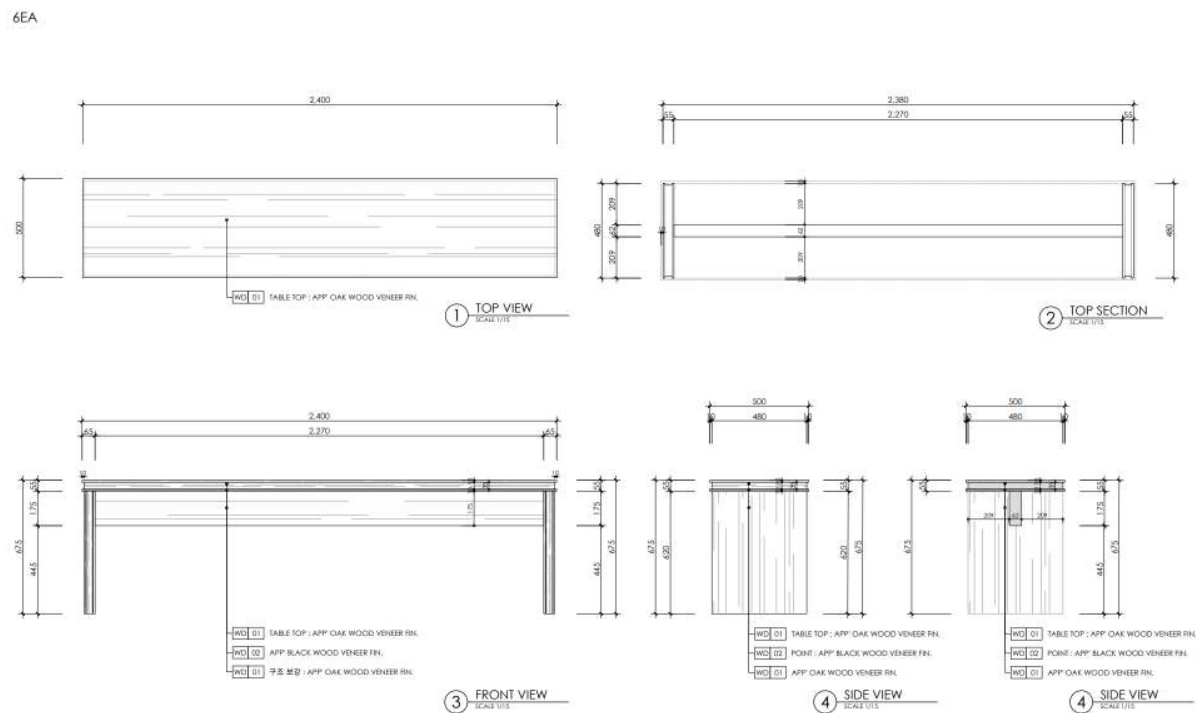


집기·장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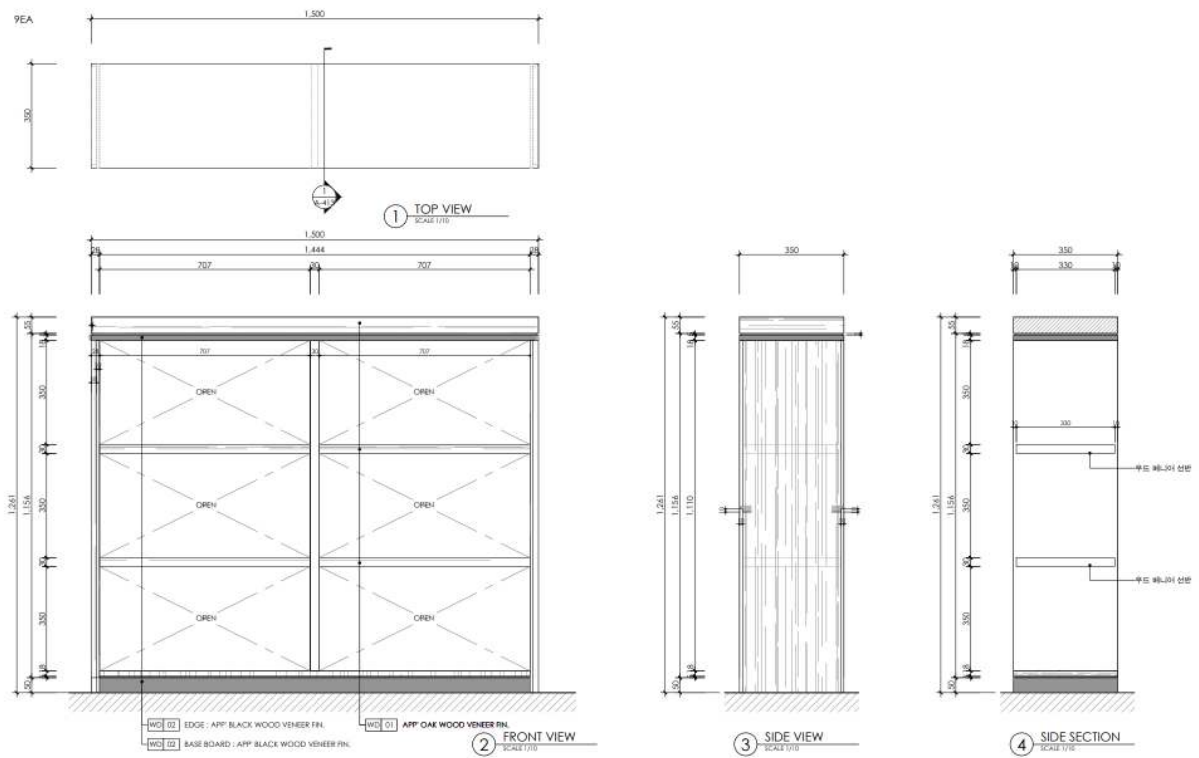
제작가구 ① 대형 디스플레이 테이블 (3EA) — W2,400×D1,200×H75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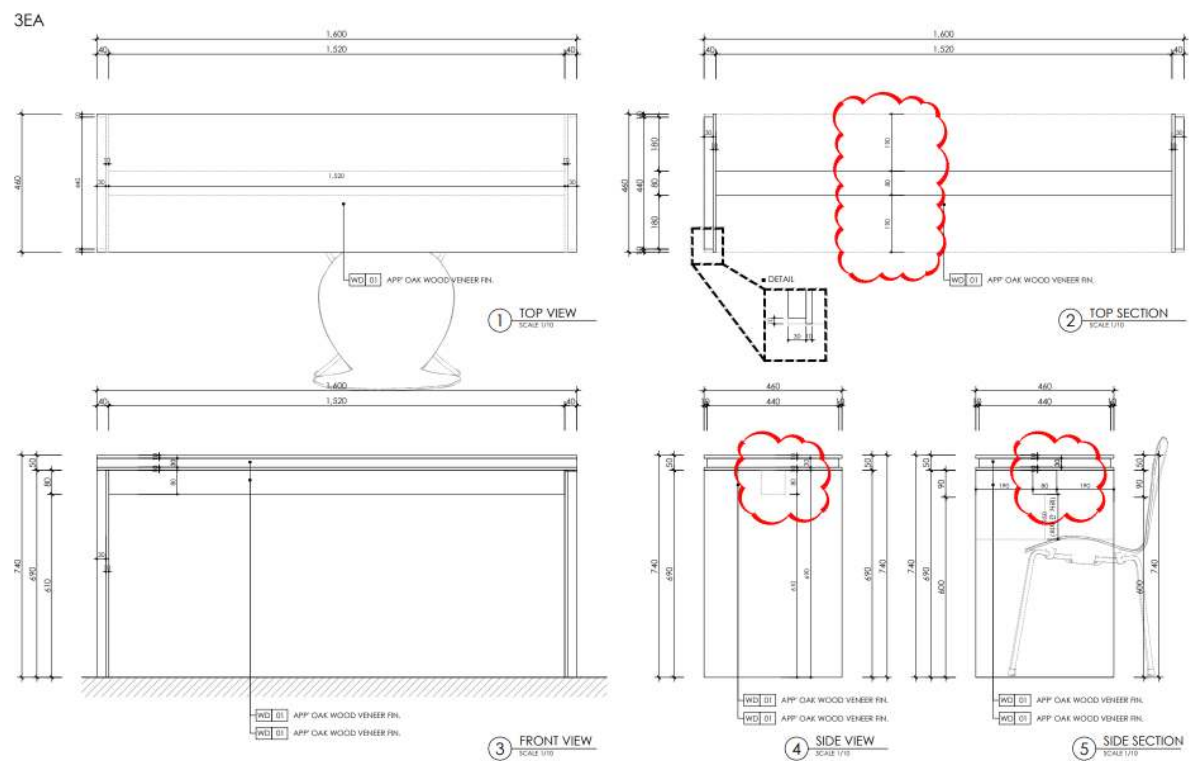
제작가구 ② 카운터 디스플레이 벤치 (6EA) — W2,400×D500×H850mm



제작가구 ③ 오픈 북셀프 (9EA) — W1,460×D350×H1,2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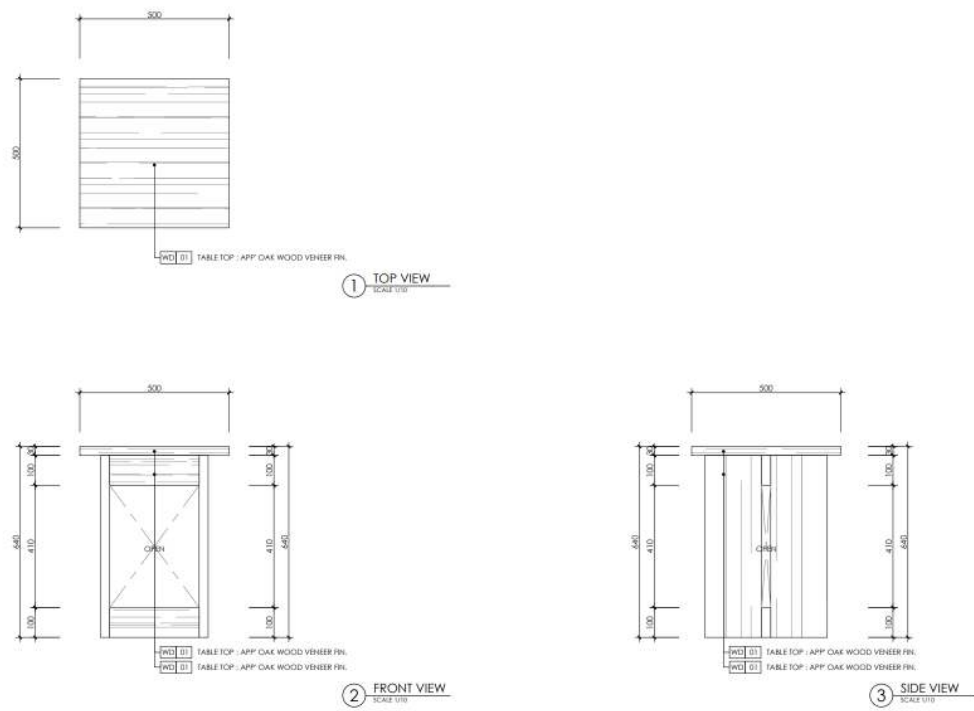


제작가구 ④ 등받이 리딩 벤치 (3EA) — W1,460×D340×H7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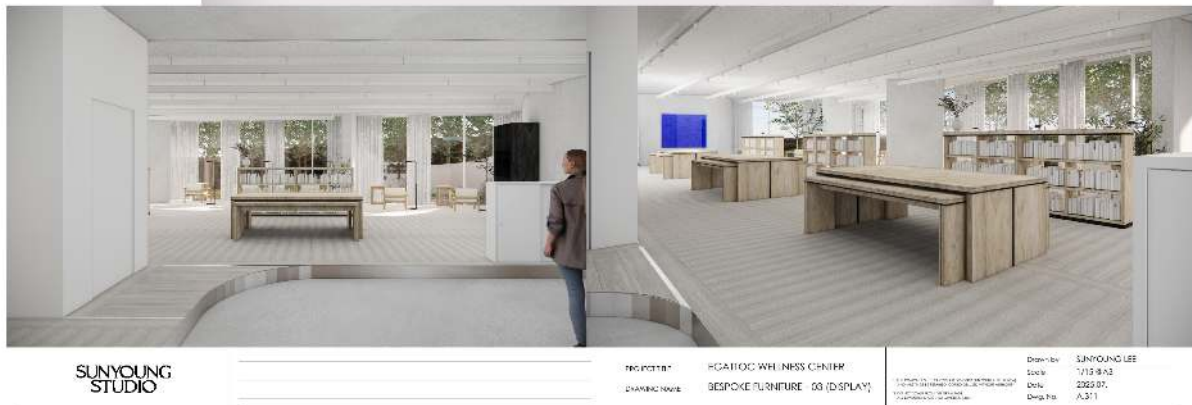


제작가구 ⑤ 사이드 테이블 BF09 (10EA) — W500×D500×H640mm

BF09 - SIDE TABLE - 10EA



렌더링 — 디스플레이 테이블 배치



렌더링 — 북셀프 배치

[붙임 3] 부대시설 세부내역

※ 부대시설의 세부 구성·이미지는 추후 첨부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자리표시이며 빈칸으로 둡니다.)

부대시설	세부 구성
준비/대기 공간	행사 준비·대기를 위한 별도 공간 제공 (사전 협의 필요)
주차공간	전용 주차 공간 제공 (차량 대수 계약 시 협의)
기타 부대시설	화장실, 냉·온수, 기본 전기 콘센트 와이파이 제공 (행사 전용 비밀번호 별도 안내)

[별표] 관련 서식 목록

본 약관 및 대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이 사용된다. 각 서식은 별도로 제공·첨부된다.

1. 대관 이용신청서(문의 접수폼)
2. 대관 견적서
3. 대관 계약서
4. 공간 사용 규정(하우스룰) 수령 확인서
5. 촬영·콘텐츠 사용범위 확인서
6. 외부 업체·물품 반입 신청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취소·환불 신청서
9. 입장 전 공간 상태 체크리스트
10. 보증금 차감 기준표

문의 및 대관 신청

에이비티제주 (브랜드: 에가툷 / EGATTOC)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266

이메일: aboveground@abtbeauty.com | 대표자: 김한균, 조남기